

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장문혁)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가족복지과장)	일 자	질의	2021년 5월 12일
			답변	2021년 5월 12일
회 의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문요지

-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관련 영농손실보상 관련법 자료

답변내용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단위 경작 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당시 청소년수련관 신축 부지로 매입한 평창읍 중리 165-1번지 외 1필지 3,86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 산출내역 : 1)3,413원(3년간 실제소득평균 × 2년분) × 3,867㎡(경작 면적)

붙임 관련법령 1부.

1)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산정한 금액

관련법령 발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1.~ 90. 생략

9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93.~111. 생략